

< 의 견 서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주)우람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학동 (인)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30길 73 TEL 053-742-0954(HP 010-3502 5682)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4.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의3제8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한 구조분야 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개정안 삭제>	구조분야도서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으로 이루어 질수있다 구조도면의 작성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숙지하고 건축사가 도면화하여 제작하여 오고있다 건축도면, 구조도면을 이원화하여 분리하는점은 책임성불분명, 작업시간낭비, 설계비의 상승, 공사현장혼란, 국민부담가중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축물을 창조하는 일에는 공학과 미학을 포함하는 여러부분이 있다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방재 등 현대문명의 총합체 가 구현된다 이 시점에서 건축사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여 건축의도를 구현하고 있다 이원화로 설계가 진행되기에는 도면의 정합성 측면에서 업무부실과 책임소재공방이 예상되며 구조도면작성인력의 부족으로 하도급 발생등 원래의 취지와 다른 기현상을 야기할것으로 예상됨.